

## 국제교육원 운영규정(4-1-7)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건양대학교 국제교육원(이하 “본 원” 라 한다.)의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의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선발, 학업 및 학생지도 등 학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건전한 면학과 유학생들의 내실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02.01)

제2조(사업)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해외 홍보 및 국제교류에 관한 업무
2. 국제 학술교류에 관한 업무
3. 국외 대학과의 자매결연 및 상호교류 협약체결에 관한 업무
4. 해외 교환학생 선발 및 파견에 관한 업무
5. 학생 단기 해외어학연수 및 한국어연수에 관한 업무
6. 외국인 유학생 출입국에 관한 업무
7. 삭제(2007.03.01)
8. 소관 제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
9.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업무
10. 삭제(2007.03.01)
11. 삭제(2007.03.01)
12. 삭제(2007.03.01)
13. 삭제(2007.03.01)
14. 삭제(2007.03.01)
15. 어학연수생 선발에 관한 업무(신설 2010.02.01)
16. 국고사업에 관한 업무(신설 2010.02.01)

### 제2장 조 직

제3조(기구) 본 원 사업을 위하여 본 원 내에 국제교육팀, 한국어교육센터를 둔다.(개정 2017.01.26., 2018.07.16)

제4조(원장) ① 본 원은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7.01.26.)

②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주임교수) ① 본 원은 국제교류 및 한국어교육 주임교수를 두며, 교원 중에서 원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0.08.01, 2017.01.26)

② 주임교수는 원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보좌한다.(개정 2010.08.01)

제6조(교직원) ① 본 원은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담당직원을 둔다.

② 담당직원은 국제교류, 한국어교육 등으로 업무를 분장한다.(개정 2017.01.26.)

### 제3장 운영위원회

제7조(구성) ① 본 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당연직으로 원장, 국제교류 주임교수, 한국어교육 주임교수를 포함하여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08.01., 2017.01.26.)

③ 위원장은 원장이 되며 간사는 팀장이 된다.

제8조(심의)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본 원 운영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3. 해외 교환 및 파견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
4. 한국어연수에 관한 사항
5. 본 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제9조(의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0조(임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4장 한국어연수과정

제11조 (한국어연수과정) 본 원은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의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어연수과정을 두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원 한국어연수과정 운영 규정에별도로 정한다.(개정 2010.02.01)

## 제5장 해외자매대학 교환학생

제12조(해외자매대학 교환학생) 해외자매대학 교환학생에 관한 사항은 해외자매대학 교환학생 규정에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0.02.01)

## 제6장 정부초청 외국인장학생

제13조(정부초청 외국인장학생) 정부초청 외국인장학생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부초청 외국인장학생 운영 규정에 별도로 정한다.(신설 2010.04.01)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신설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07.16.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범위) 직제규정 제25조(타 규정 적용) 및 전략기획18-0656(2018.07.16.) ‘직제 변경에 따른 규정 내 직제명칭 일괄 개정 계획(안) 보고’에 따른 개정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3조 중 “국제교육팀”을 “국제교육팀, 한국어교육센터”로 한다.